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 번호 | 21-117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1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록대상동물 월령을 개정하고 길고양이의 중성화 후 방사 장소에 대한 단서 규정과 반려견 놀이터의 용어 정의 및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(안 제2조제2호)
- 나. 길고양이 방사 장소에 대한 단서 신설(안 제16조)
- 다. 반려견 놀이터 용어 정의 및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(제23조)
- 라. 인용 범조항 수정(제8조 및 제9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(공공시설)
 - 2) 「동물보호법」 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제1항제6호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1. 8. 12. ~ 9. 1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해당없음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5) 제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1.9.28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3개월”을 “2개월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“반려견 놀이터”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법 제15조제3항”을 “법 제15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법 제15조제6항”을 “법 제15조제7항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방사할 수 있다”를 “방사해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.

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3조(반려견 놀이터 설치·운영)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반려견 놀이터(이하 “반려견 놀이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견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맹견
2. 「동물보호법」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
3. 다른 반려견에게 불편 또는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소유자 또는 반려견
 - ③ 반려견 놀이터에서 소유자 또는 반려견이 고의나 과실로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소유자가 변상하여야 한다.
 - ④ 구청장은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는 소유자 또는 반려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.
 - ⑤ 제2항부터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반려견 놀이터의 운영방법 및 운영시간, 이용수칙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등록대상동물”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·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(月齡) <u>3개월 이상인 개</u>를 말한다.</p> <p>3. ~ 7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|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2개월</u> ----- -.</p> <p>3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“<u>반려견 놀이터</u>”란 <u>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.</u></p> |
| <p>제8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·지정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<u>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</u>를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⑦ (생 략)</p> | <p>제8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·지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법 제15조제4항</u>----- -----.</p> 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9조(동물보호센터 감독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<u>별</u></p> | <p>제9조(동물보호센터 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법 제15</u></p> |

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,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16조(길고양이의 관리 등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③·④ (생략)

<신설>

조제7항-----

-----.

제16조(길고양이의 관리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방
사해야 한다. 다만,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반려견 놀이터 설치·운영)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반려견 놀이터(이하 “반려견 놀이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견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3의 2호에 따른 맹견
2. 「동물보호법」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

3. 다른 반려견에게 불편 또는
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소
유자 또는 반려견

③ 반려견 놀이터에서 소유자
또는 반려견이 고의나 과실로
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그 밖에
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
소유자가 변상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반려견 놀이터를
이용하는 소유자 또는 반려견의
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
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가 발생
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을
진다.

⑤ 제2항부터 제4항에서 정한
사항 이외에 반려견 놀이터의
운영방법 및 운영시간, 이용수
칙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별
도로 정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반려견 놀이터 설치·운영(안 제23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

4. 작성자 : 관광일자리국 지역경제과 안정현 (☎3153-8542)